

# 관세청 2025년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안내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 목 차

- I. 추진 배경
- II. 현행 가격신고 제도의 문제점
- III. 가격신고 제도 개편과 납세신고 4단계 관리 방안
- IV. 제도 개편 주요 내용
  1.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
    - [제도 1] 과세자료 제출 생략
    - [제도 2] 동일 조건거래, 연 1회 자료 제출
    - [제도 3] 과세자료 제출 목록 구체화
    - [제도 4] 과세자료 사후 제출 허용
  2. 가격신고서 서식 개편
- V. 과세자료 미제출 기업 관리
- VI. 맺음말

## I 추진 배경

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상 신고납부제도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가격을 기반으로 한다.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신고 생략 대상이 아니라면 모든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할 때 가격신고와 함께 과세자료를 제출할 법적 의무를 갖는다.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과세가격 신고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가격신고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상태였다. 가격신고 자체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관련 과세자료 제출도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가격신고 제도의 불완전한 작동은 과세당국과 기업에 모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과세당국은 신고된 과세가격의 정확성을 확인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 수입신고내역 등 간접적인 자료를 토대로 세액탈루 위험을 분석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하면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제외되고, 오히려 낮은 기업이 포함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나아가, 세관은 추후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관세조사 인력을 수개월간 투입해서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과세가격 조기 점검의 기회를 상실해 경영상 위험 부담이 높아진다. 가격신고 프로세스에 따라 신고대리인이 1차 점검하고, 세관이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또는 세액심사 등 사후 점검 과정에서 2차 점검을 하면 여러 가지 납세 오류를 조기에 정정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관세조사 과정에서 세액 오류가 발견되면 관세 부과 제척기간 5년 치에 해당하는 세액과 가산세를 일시에 추징당하게 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추징액으로 도산의 위기를 겪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과세가격 신고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사후심사 프로세스인 '선 심사착수, 후 자료

확보'를, '선 자료확보, 후 심사착수'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I 현행 가격신고 제도의 문제점

가격신고 제도는 관세법과 시행령에서 제출 의무자 등 중요사항을 정해놓고 있지만, 세부내용은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동안 제출 생략 대상 등 위임된 내용이 구체화되지 못하다 보니, 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려면 대다수 기업이 수많은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매번 가격신고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어떤 수입자는 1년 단위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하고 100건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동일한 로열티 계약서를 수십 번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관세평가의 특성상 다양한 평가요소가 반영되어 과세가격이 확정되는데, 어떤 자료를 내야 할지 수입자가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 가산 요소와 공제 요소 외에도 상계, 간접 지급, 특수 관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고 각 사안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AEO, ACVA와 같은 납세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세관 점검을 받는 기업이나, 수입 규모가 작아 관세탈루 위험이 낮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과세가격 점검 필요성이 낮아도 이를 고려한 차등화된 가격신고 제도 설계가 부족했다.

## 해설

### Ⅲ 가격신고 제도 개편과 납세신고 4단계 관리 방안

이번 제도 개편은 관세청의 '납세신고 4단계 관리 방안'과 직결되어 있다. 최대한 조기에 납부세액 신고 오류를 확인하고 치유하기 위해 4단계의 프로세스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1단계] 수입통관 시점에 납세자의 '정확한 가격신고와 성실한 자료 제출'을 기반으로 위험 분석에 활용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단계]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통해 오류 위험 정보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자율 점검·치유를 유도하며, [3단계] 자율점검이 이행되지 않은 기업 등에 대해 수입건별 세액심사를 실시하고, [4단계] 자료 미제출 등 기업 전반에 대한 오류 점검이 필요한 경우 관세조사를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납세신고 4단계 관리 과정에서, 수입신고 시점에 정확한 가격정보와 과세자료를 납세자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확보한 정보·자료를 관세청 정보와 연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조기에 신고 오류를 찾아 치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고액 추징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고, 세관은 효율적인 세액심사·관세조사 대상 선정과 신속한 심사 절차의 마무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 Ⅳ 제도 개편 주요 내용

#### 1.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의 내용은 「꼭 필요

한 기업만!, 꼭 필요한 자료만!, 일 년에 꼭 한 번만!」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모든 수입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해,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을, 과세자료 제출 대상과 제출 방식, 그리고 제출 대상 자료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①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업과 소규모 수입 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되고, ②동일 판매자 및 같은 조건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③과세 자료 제출 분야는 8개 분야로 한정해 분야별로 1개 이상 자료만 제출하고, ④만약 수입 시점에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통관 후 30일 이내에 사후 제출할 수 있다.

#### [제도 1] 과세자료 제출 생략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납세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AEO 및 ACVA 해당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해당 기업들은 종합심사 또는 연례보고와 같은 방식으로 납세신고 오류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AEO는 '수입' 부문만, ACVA는 '결정 품목'만 해당된다.

또한,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기업도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수입기업의 과세가격 부분에 대한 심사 실익이 크지 않고 기업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였다. 다만, 이러한 소규모 기업도 관련 법령에 따른 자료 보관 의무는 기존과 같다.

약 23만 개 수입기업 중 많은 기업이 연간 납

부세액 5억 원 미만의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별 전년도 납부세액은 매년 1월 15일경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도 2] 동일 조건거래, 연 1회 자료 제출**

동일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매년 최초 수입 시 1회만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수입신고 건 단위 가격신고와 통상 기간 단위로 관리되는 과세자료의 괴리를 보완하고 제출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수입되는 물품의 종류가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자료(계약서, 내역서 등)로 입증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단일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의류, 신발, 가방류 등의 경우 매년 최초 수입되는 물품에 로열티 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또한, 해외 생산자에게 무상으로 단일 공급된 용역으로 생산되어 수입되는 자동차 완제품, 부품의 경우 최초 수입되는 물품에 생산지원 관련 계약서나 공급 내역서를 첨부하면 된다.

과세자료를 제출한 후 동일 조건으로 추가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연중 최초 수입되어 과세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물품의 수입신고번호만 가격신고서에 기재하면 된다. ※ 가격신고서 양식 개정 시행 (2025.12.1.) 전까지는 수입신고서의 '신고인 기재란'에 표기

**[제도 3] 과세자료 제출 목록 구체화**

과세자료 제출 대상 분야를 8개로 특정하였

고, 분야별 제출 자료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자료 중 1개 이상만 제출하면 된다. 8개 분야는 과세가격에 대해 세관장의 검토가 필요한 ①권리 사용료, ②생산지원, ③수수료·중개료, ④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⑤용기·포장비용, ⑥사후 귀속이익, ⑦간접 지급금액, ⑧특수 관계자 거래 분야이다.

분야별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해당 분야 관련 계약서나 산정·지급 내역서 중 1가지 이상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계약서 등 자료에는 구체적인 지급액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지급 조건, 지급률 등 일반적인 계약 정보가 확인되면 된다. 가격신고 시점에 제출하는 과세자료는 추가 검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제8호로 규정되어 납세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만약,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의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을 때는, 과세자료 대신에 '과세가격 결정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된다.

**[제도 4] 과세자료 사후 제출 허용**

무역 거래의 특성상 과세자료가 판매자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부득이 자료의 확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관 후 30일 이내 사후에 과세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유의할 점은,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자료 대신 '과세가격결정자료 지연 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2. 가격신고서 서식 개편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의 핵심인 '가격신고서' 질의 항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신고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와 세관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질의 항목을 개선하였다.

기존 질의 항목 중,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 영향 여부(7(C))'와 '거래가격의 비교 가격 근접 여부(7(D))'와 같이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질의 항목은 삭제하였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관련해 '수입가격 결정 방법'을 객관식으로 묻는 질의 항목을 새롭게 추가(8(D))하였고, 동일 조건 거래의 경우 '과세자료가 첨부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는 항목을 가격신고서에 신설(7)하였다.

V 과세자료 미제출 기업 관리

그간 가격신고와 관련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자료 제출 업무 부담이 다소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불성실한 과세자료 제출을 방지한다면 공평과세에 부합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기업이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입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할 경우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관 후에 사후심사 부서에서 과세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수입 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 과세자료의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30일+30일 연장 가능)

다음으로, 추가 기회에도 제출하지 않을 때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 납세절차상 혜택을 미부여하고,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 대응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VI 맺음말

이번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은, 신고 대상과 운영을 효율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성실신고 유도를 통해 공정과세 기반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의 법적 의무는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그러나 수입기업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가격신고와 관련한 실무를 이행하는 전문가이자, 세관과 기업을 연결하는 신뢰의 교량은 관세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편은 고시, 서식,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인 만큼,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납세자에게 설명하여 실제 신고에 반영하도록 하는 관세사의 역량과 관심이 이번 제도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과세가격 신고의 정확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항상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사도 제도 개편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기여해주시길 기대한다. **●**